

보도자료

2024. 4. 29.



양형위원회

문의

운영지원단장 문중흠
(☎ 02-3480-1924)

양형위원회 4/29(월) 제131차 회의 결과

양형위원회(위원장 이상원)는 2024. 4. 29. 15:35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어, [1]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, [2]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을 심의하였음

[심의 요지]

- ☑ 기존 설정범죄에 더하여, 전기통신금융사기, 보험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고, 그 유형을 분류함
- ☑ 기존 설정범죄에 더하여,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새로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고, 그 유형을 분류함

① 제9기 양형위원회 회의 진행 경과

- ▣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, 발생 빈도,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, 제9기 양형위원회는 2023. 6. 12.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를 선정함

- ▣ **하반기(2024. 4. 27.~2025. 4. 26.)에 예정된 과업**은 다음과 같음

※ 상반기(2023. 4. 27.~2024. 4. 26.)에는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,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각각 수정하고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, 각 양형기준은 2024. 7. 1. 시행될 예정임

○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(예정)

-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, 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보이스피싱 사기,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

요구가 높고,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

○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(예정)

-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을 반영하고, 사기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수정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전반을 정비

○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(예정)

- 동물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고,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됨
-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,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며,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
○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(예정)

-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(성폭력처벌법 제11조),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(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, 제2항) 및 피감독자 간음, 피보호자간음(형법 제303조 제1항)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 등을 검토

2 제131차 회의결과의 요지

1.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

가. 설정 범위

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

-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통신사기 피해환급법’)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특별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음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. 5. 16. 개정되어 2023. 11. 17. 시행되면서,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%를 차지하는 ‘대면편취형’ 사기가 포함되었고, 법정형도 ‘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~5배에 해당하는 벌금’으로 상향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함

■ 보험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

- 보험사기[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(이하 ‘보험사기방지법’)위반]의 경우 2018년

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,209건으로,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입

-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

■ 설정 범위 정리(사기범죄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되는 범죄)

적용법조		구성요건	법정형
통신사기피해환급법	제15조의2 제1항	전기통신금융사기(공갈 제외)를 행한 자/정의(제2조 제2호)	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~5배 벌금(병과 가능)
	제15조의2 제3항	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	형 1/2 가중
보험사기방지법	제8조 제1항 제1호	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	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(병과 가능)
	제9조	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	형 1/2 가중
	제11조 제1항	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(제1호)	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(벌금병과 가능)
		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(제2호)	3년 이상 징역 (벌금병과 가능)

나. 유형 분류

- 법정형, 구성요건,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,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양형기준상 ‘조직적 사기’의 권고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함

- 01 일반사기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억 원 미만			
2	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			
3	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			
4	50억 원 이상, 300억 원 미만			
5	300억 원 이상			

○ 02 조직적 사기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억 원 미만			
2	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			
3	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			
4	50억 원 이상, 300억 원 미만			
5	300억 원 이상			

2.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

■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·보관·전달·유통하는 범죄를 새로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

- 이른바 ‘대포통장’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범죄수익의 취득 및 은닉을 조력하는 범죄로,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로 관심이 높아짐
- 전자금융거래법이 2020. 5. 19. 개정되어 2020. 8. 20. 시행되면서, 기존 설정 대상 범죄의 **법정형**이 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’에서 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’으로 **상향**되었고, ‘**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·보관·전달·유통하는 자**’(제49조 제2항 제5호)가 처벌대상으로 신설됨
-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범죄(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)와의 관련성,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, 전자금융거래법 상 ‘**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·보관·전달·유통하는 범죄**’(제49조 제2항 제5호)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킴

■ 법정형,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기로 함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적 범행			
2	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			

③ 향후 일정

■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1)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, ⇨ 2) 유형 분류 결정, ⇨ 3) 권고 형량범위 설정, ⇨ 4) 양형인자 설정, ⇨ 5)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루어짐. 이번 회의에서는 1) 및 2)에 대하여 논의하였음

■ 향후 다음 일정을 거쳐 양형기준이 심의·확정될 예정임

- 2024. 6. 양형위원 전체회의: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(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)
- 2024. 8. 양형위원 전체회의: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수정안 확정
- 2024. 9. 양형위원 전체회의: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수정안 확정
- 2024. 11. 양형위원 전체회의: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(권고 형량범위, 형종 선택의 기준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설정안 확정
- 2025. 1. 양형위원 전체회의: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유기준) 및 수정안 확정, 각 양형기준안 의결
- 2025. 1. ~ 2025. 2.: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,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 진행
- 2025. 3. 양형위원 전체회의: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의 및 각 양형기준 최종 의결

■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(제132차 회의)

- 일시: 2024. 6. 17.(월) 오후, 대법원 회의실
- 안건: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 심의,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 심의